

『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최 기 준

나. 제안이유

- 고대 신라 불교전래 역사현장을 전승·보전하고 불교문화의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[안건]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

○ 토 지 (취득)

- 면 적 : 31,444m²(답,19필지)
- 예정가격 : 1,163,428천원(가감정가)

- 건 물 (신축)
 - 면 적 : 2,300m²(3동)
 - 예정가격 : 12,35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- 편 의 시 설 (신축)
 - 면 적 : 1,100m²
 - 예정가격 : 54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계획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신라불교문화 초전지조성사업 대상 부지 도개면 도개리 364번지 외 18필지 31,444m²를 취득하고, 불교문화체험관 800m², 불교문화 스토리텔링관 1,000m², 불교문화역사관 500m²과 편의시설 1,100m²를 신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은 구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시 기반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위 사업은 2011. 8. 31. 국·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사항으로 올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, 2011년 추경예산에 7억 1천 7백만원, 2012년 당초예산에 40억 4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.
-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용도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